[별표 1-7]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기준<신설 2012.5.22.><변경 2012.12.3>

계획목표	계획기준
하천재해 예방	○ 지구조성 높이는 「하천법」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(이하 “하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상의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계획하되,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계획할 경우에는 유수지 등 방재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. ○ 교량, 보(洑)등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유수(流水) 소통 능력, 세굴(洗掘) 등을 검토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 ○ 개발로 인한 유출량이 하천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, 필요할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하천하류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 ○ 주택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하천은 하천기본계획 등을 검토하고, 필요할 경우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확대하는 등 하천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내수침수 재해예방	○ 이상 강우에 대비하여 도로 등의 지표수(地表水)는 배수가 용이하도록 집수정(集水井)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 ○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침투(浸透)통, 침투트렌치, 침투측구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○ 주택지구를 성토(盛土)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이 저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저지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○ 주택지구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규모는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따른 하수도설계기준을 준용하며, 집중호우 등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기술적 판단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다.

계획목표	계획기준
	○ 주택지구의 배수계획은 유출 지역(하천, 바다 등)의 수위(水位)를 고려하여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, 지역여건상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배수펌프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,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 ○ 주택지구 인접 산지 등에서 우수가 지구 내로 유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부유물, 토석류 등에 의해 관(管)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○ 주택지구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지구 밖의 배수시설물에 대한 유수 소통 능력을 검토하고 유수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안을 마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
비탈면붕괴 예방	○ 자연 비탈면은 가능한 유지하여야 하며 절·성토에 의한 비탈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○ 옹벽 등 인공 비탈면은 충분한 배수시설을 계획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 ○ 비탈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유역면적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점검로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계획하여야 한다. ○ 주택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지구 밖의 산지는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비탈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험도 평가는 「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(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-33호, 2009.9.9, 제정)」을 준용할 수 있다. ○ 특히, 지구 내 자연 비탈면과 인공 비탈면은 대표 단면에 대해 비탈면안정성 해석 등 공학적인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재

계획목표	계획기준
	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, 필요할 경우 적절한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비탈면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주 : 1. “계획홍수위”란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 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.

2. “우수유출저감시설"이란 우수(雨水)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.

3. “재해위험도평가"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·지리적 여건,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,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(定量)·정성(定性)적으로 위험도를 분석·예측하는 것을 말한다.